

일본의 육류 수급 및 가격 정책 *

허 덕

1. 머리말

2010년 말부터 발생한 구제역 파동 이후 돼지가격 상승 등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 문제가 있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소 가격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올 연초에는 한우 및 육우농가들의 과격한 행동까지 발생하였고, 정부는 소값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사태는 아직 진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축산물 가격 등락에 의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축산정책 특히 식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한 축산정책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본고에서는 우리와 사정이 매우 유사한 일본의 축산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하는 식육의 수급 및 가격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 본 내용은 일본 농축산진흥기구 및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덕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huhduk@krei.re.kr, 02-3299-4261).

2. 일본 육류 관련 정책의 분류

일본은 다양한 축산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의 육류 관련 정책들을 수급정책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정책의 목표를 수급조절에 둔 경우라면, 그 구체적인 조절의 대상이 수요의 조절이냐 또는 공급의 조절이냐 또는 수급균형 유도냐에 따라 동원되는 정책의 수단은 달라진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공급이나 수요의 확대나 축소냐 또는 안정적 유지여부인지에 따라 그 정책의 대상이 국내산 수급용인지 수출입용인지에 따라서도 정책수단을 분류할 수 있다. 아래 <표 1>은 정책목표에 따라 일본의 육류 정책을 분류한 것이다. 분류에 있어 먼저 공급과 수요부문의 확대와 축소하는 방법 또는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3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이를 다시 정책의 대상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여부를 구분한 후 일본의 육류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세부화 하여 정책 목표별로 분류하였다.

표 1 육류 수급안정 관련 제도의 유형화에 의한 일본 정책 도입사례

정책 대상	대상 품목	정책 수단	구체 사업명	도입사례
공급 축소	국내산	도태		육류가격안정제도(구 지정식육가격안정제도)
		수매	가격안정대, 가격지지	돈육가격안정제도, 지정식육가격안정제도,
		결손지불	가격차보전	지역육돈생산기금조성사업
			소득차보전	
	수출입	수출	수출보조금 지원	
		수입제한	수입금지 등	차액관세제도, SG 및 SSG, 적정수입량 조정
안정적 공급	국내산	계획공급	안정공급 또는 소득안정 사업	육용우 생산성향상 긴급대책 사업, 육용우 번식경영대책(구 육용우 번식기반 강화 종합대책 사업), 축산낙농경영안정대책, 양돈경영안정대책사업, 다양한 축산경영 추진과 경쟁력 강화사업
			가격안정사업	육용우비육경영 안정대책사업, 비육우생산자 수익성저하 긴급대책 사업
		계약생산	계약화 및 계약생산	
		등록제	등록제, 이력추적제	등록제, 소 Traceability(이력추적제)
		생산제한	가축단위	
	수출입	수입쿼터	제도	식육 등 유통합리화지원 제도 중 수출입의 급격한 변동 등에 대응하는 계획에 대한 지원
			자율	자율적 적정수입량조절(자율적 수입쿼터)

정책 대상	대상 품목	정책 수단	구체 사업명	도입사례
수요 확대		자조금		
		홍보		국산쇠고기시장개척 긴급대책사업
		교육		지역양돈진흥특별대책사업
		가격차별		
		상품차별		브랜드지원
		단체급식	학교급식 등	학교급식
안정적 수요	국내산	직거래		
		유통합리화	유통합리화지원	식육 등 유통합리화지원(강한농업만들기지원, 산지재상관련시설긴급정비사업 등)
수급 균형 유도		관측		육돈생산출하예측, 돈육소비동향분석, 재고량조사, 수입예정량 조사
		예시가격		경영지표설정
		독과점규제		
		수출입관세		차액관세제도
		가격지지	가격안정대	지정식육의 가격안정제도, 지역양돈진흥특별대책사업
			기준가격설정	육용송아지가격안정제도(구 송아지생산확대장려사업)
		위험분산	선물시장	계란선물시장
			가격보험	지역육돈 생산안정자금 조성사업 중 보험설계

우선 국내산의 공급축소를 위해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으로는 도태나 수매, 결손지불과 같은 정책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의 육류가격 안정제도의 일부는 도태에 관련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수매 관련 정책수단으로는 가격안정대 정책이나 가격지지 정책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들은 모두 같은 경제효과를 기대하는 정책들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은 양돈 분야에서 모두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결손지불정책으로는 가격차보전과 소득차 보전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두 가지 모두 도입하였고 일본은 과거 가격차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었지만, 최근 소득보전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의 축산물 수출입 정책으로는 돼지고기 분야에 차액관세제도 및 긴급조정조치(Safe Guard, 이하 SG), 특별긴급조정조치(Special Safe Guard, 이하 SSG) 등의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미약하다.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국내산에 대해 계획생산, 계약생산, 등록제 및 이력추적제 등의 방법과 생산제한 등의 정책수단이 그리고 수입육에 대해서는 수입쿼터제도 등이 선택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제도 중 극히 일부만이 도입되어 있

는 반면, 일본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서로 다른 정책수단들을 도입하고 있다.

수요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자조금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축종별로 자조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일본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한편 수급균형유도를 위한 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미약하지만, 일본에서는 도입·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일본의 주요 축산물 가격안정 제도의 개요

일본은 1961년 「농업기본법」을 제정하여 축산업을 선택적 확대산업으로 지정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1961년),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 등 잠정조치법(1965년) 등을 제정하여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후 1999년 「식량·농업·농촌기본법」, 1994년, 2000년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 등 잠정조치법」 개정으로 축산물가격 안정 정책에서 경영안정대책 중심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축산물 경영안정대책으로는 육용우 번식경영 지원 사업, 육용우 비육경영 안정 특별 대책 사업, 양돈경영 안정 대책 사업 등이 있고,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육용 송아지, 낙농을 대상으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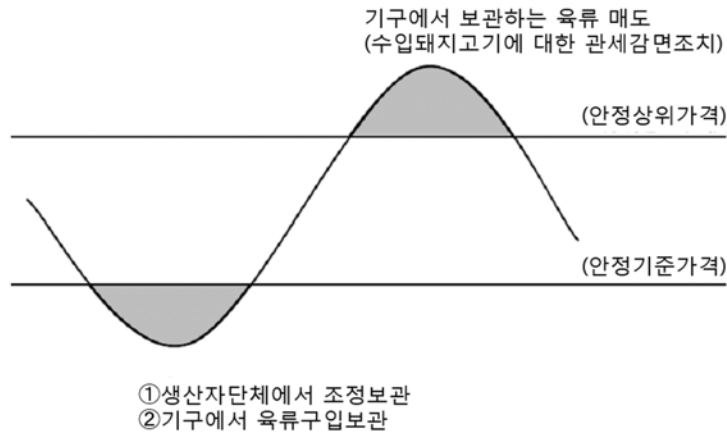
3.1. 육류가격 안정제도

이 제도는 「축산물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가 수급조절을 통해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가격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이 제도의 목적은 생산자의 경영 안정과 안정적인 육류 공급을 위한 것이다.

이 제도에서 기준이 되는 가격은 도매가격이며, 도매가격의 상한(안정상위가격)과 하한(안정기준가격)을 설정한 후, 도매가격이 하한선인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수매하고, 안정상위가격을 상회할 경우에는 방출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2011년의 경우 돼지고기 안정기준가격은 1kg당 401.26엔이었고, 안정상위가격은 542.88엔이었으며, 쇠고기 안정기준가격은 1kg당 817.04엔이었고 안정상위가격은 1,061.22엔이었다.

그림 1 일본의 육류 가격안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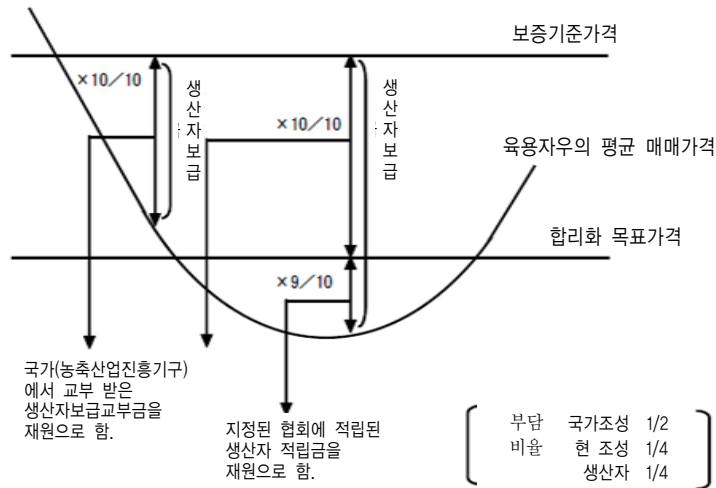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3.2. 육용 송아지 가격안정 제도

육용 송아지 가격안정 제도는 「육용자우생산안정 등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송아지 생산을 보증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육용송아지의 시장거래가격이 보증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그림 2 육용자우 생산자보급제도의 개요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육용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보증기준가격은 수입자유화 전의 농가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하며, 합리화목표가격은 경쟁력 있는 자국산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비육에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안하여 산정한다. 두 가격 모두 흑모화우(黒毛和牛), 갈모화우(褐毛和牛), 기타 육류전용종, 유용종(홀스타인종 수소), 교잡종(육용종과 홀스타인종) 등 품종별로 산정한다.

보증기준가격과 합리화 목표가격 산출식에 의하여 계산된 각각의 2010년 가격은 아래 <표 2>와 같다. 일본에는 해마다 육용송아지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는 육용 송아지 시장거래 가격 중 최소 하나 이상의 가격이 보증기준가격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0년대 초반에 지원금 지출액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2 보증기준가격과 합리화 목표가격, 2010년

단위: 천 엔/두

	흑모화우	갈모화우	기타 육류전용종	유용종	교잡종
보증기준가격	310	285	204	116	181
합리화목표가격	268	247	142	83	138
두 가격 간 차이	42	38	62	33	43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표 3 육용송아지 지원금 교부 실적

단위: 억 엔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액	325	187	244	175	26	7	29	110	71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3.3. 차액관세제도

일본은 1971년 자유화하면서 국내 가격안정제도와 링크(link)시킨 차액관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수입은 기본관세(종가세) 또는 차액관세 중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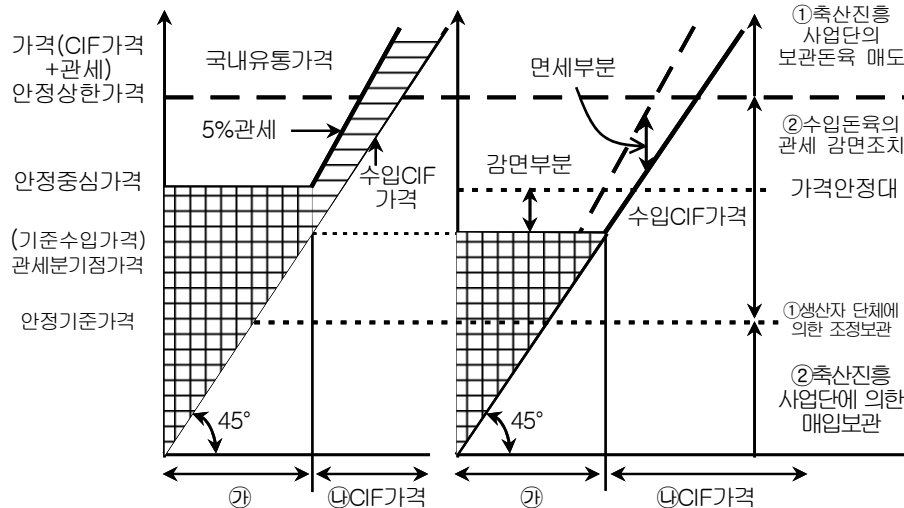
차액관세는 수입 돼지고기가 비록 소량이라도 국내에서는 안정중심가격 이상으로 판매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안정중심가격(=기준수입가격)과 수입가격(CIF가격)과

* 해당 품목의 수급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차액관세제도는 UR협상 당시 일본이 과거 5년 이상 지속된 정책으로 폐지대상이 아닌 정책으로 인정받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정책임.

의 차액이다. 차액관세 부과방법은 <그림 3>에 표시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안정중심 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㉑ 부분), 수입가격(CIF가격)에 대한 기본관세 5%를 부과한 금액(㉒ 부분) 중 큰 쪽을 택하여 부과한다.

그림 3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관세제도

(1) 평상시 (2) 감면의 경우



자료: 허덕 외,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돈육수출 증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이 제도는 연도별 기준가격 이상으로 돼지고기를 수입할 때는 연도별 종가세율 4.9~4.3%만 징수하고, 기준가격 이하로 수입될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 전액을 관세로 환수함으로써, 저가의 돼지고기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예를 들어 기준수입가격(= 안정중심가격)이 400엔/kg(지육기준)인데, CIF 가격이 기준수입가격보다 높은 500엔/kg이라고 가정하면, 기본관세가 5%일 경우 25엔/kg만 부과되어 525엔/kg으로 국내유통가격이 결정된다. 만약 CIF 가격이 하락하여 기준수입가격보다 낮은 390엔/kg일 경우에는 수입기준가격과 CIF 가격의 차액(400엔 - 390엔 = 10엔/kg)과 CIF 가격의 기본관세 5%(19.5엔) 중 높은 금액이 관세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 과세액은 19.5엔/kg이 적용되어 국내 유통가격은 409.5엔/kg이 된다. 단, 부분육의 경우에는 지육 수율의 0.75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육수입가격을 0.75로 나누어 적용하면 된다. 따라서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국내유통가격(CIF 가격 + 관

세)은 안정중심가격(기본수입가격)을 밑도는 경우는 없게 된다.

한편, 국내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그 발동 요건은 첫째, 수입 돼지고기가 시장유통가격(수입가격+관세+수입항으로부터 도매시장까지의 경비)이 국내도매가격을 상회하고 둘째,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상한 가격을 넘어 폭등하거나 폭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수입가격(CIF가격)이 고시가격보다 낮은 경우(㉠부분) (수입가격+관세)-고시가격 만큼 경감해주고, 수입가격이 고시가격보다 높을 경우(㉡ 부분) 관세금액을 면제해 준다. 즉, 감면 시에는 5%의 기본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차액관세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차액관세 산정 시 기준수입가격을 고시가격으로 쓴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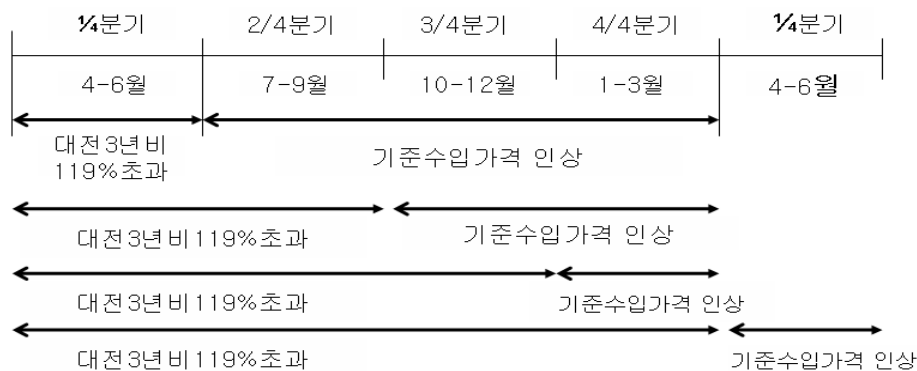
일본은 1971년 10월 돼지고기 수입을 자유화하면서 과다 수입으로 인한 국내 돼지 가격 폭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액관세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수입을 자유화하였다.

1993년 12월 15일 UR협상결과 차액관세제도는 그대로 인정받았으나, 종가세율은 1995년 4.9%를 2000년에 4.3%로 인하하도록 하였다.

3.4. 일본의 세이프가드 및 특별세이프가드

일본에서는 기준가격 또는 차액관세를 부담하면서도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 시에는 국내 돼지가격 하락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당해 분기 수입량이 전 3년간의 분기 수입량이 19% 초과 시에는 SG를 발동하고, 해당 연도 수입량의 전 3년간 평균 수입량의 19% 초과 시에는 SSG를 발동하여 관세수입기준가격을 24.4% 인상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4 세이프가드(SG) 발동의 예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실제로 일본 농림수산성은 2003년 7월 29일, 수입되는 신선·냉장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하여 긴급조치(SG)를 8월 1일부터 발동하여 수입관세를 인상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냉장쇠고기의 관세는 38.5%에서 50%로 관세율이 11.5% 인상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는 부분육 기준 수입가격이 546.53엔에서 681.08엔으로 상승, 24.6%(134.55엔) 인상되었다.

쇠고기는 1996년 1/4분기의 냉동육을 대상으로 SG를 발동한 이래 BSE에 의해 소비가 크게 감소하게 되자 수입이 크게 줄어 이에 대한 반동으로 냉장쇠고기의 SG가 발동되었다. 쇠고기의 경우는 처음으로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3년 연속 SG가 발동된 것이다. 이에 대해 수출국이나 일본의 외식·소매업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일본 농림수산성은 이를 일축하고 발동권을 행사하였다.

일본 농림수산성 축산부에 따르면 신선·냉장쇠고기는 2003년도 1/4분기(4~6월)의 냉장쇠고기 수입량이, 관세의 긴급조치(작년 동기의 117% 증가)의 발동기준수량(6만 3563톤)을 넘었기(7만 2747톤) 때문에, 관세잠정조치법 제 7조의 5 제 1 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SG를 발동하였다. 그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3년 8월 1일부터 발동
- 관세율을 38.5%에서 WTO 합의 양허수준인 50%로 인상
- 발동기간은 2004년 3월 31일까지
- 냉동쇠고기는 기준수량을 넘지 않기 때문 발동하지 않음.
- 3년 연속 SG가 발동된 돼지고기는 관세 잠정조치법 제 7조 6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3년 8월 1일부터 발동하고, 발동 뒤의 기준수입가격을 WTO 합의 양허수준까지 인상. 발동기간은 2004년 3월 31일까지임.

「냉동쇠고기」에 대해서는 SG 발동에 이르지 않고, 종래대로 38.5%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신선·냉장쇠고기의 발동에 따른 영향으로 소매가격의 상승이 최대 2.5% 정도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농림수산성에서는 외식 산업에서는 쇠고기 외에, 여러 가지 식자재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메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억제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농림수산성은 편승가격인상 방지하기 위해 매주 1회, 미국산, 호주산 쇠고기의 대표적인 부위의 도매가격과 할인점에서의 소매가격, 외식점의 메뉴 가격 등에 대해 긴급 조사하여 그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로 하였다. SG 발동으로 쇠고기의 직접적인 도매 소매가격 상승은 계산상 최대한 각각 8%, 2.5%정도로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3.5. 축산물 브랜드 지원

일본의 돼지고기 브랜드 지원사업은 지역양돈진흥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쇠고기브랜드 지원사업은 국산 쇠고기시장개척 긴급대책사업의 이름으로 전개되었다. 일본의 쇠고기브랜드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5.1. 국내산 쇠고기 시장 개척 긴급 대책 사업의 목적

- 1) 유용종 소의 쇠고기에 대해서는 「적당한 가격의 자국산 쇠고기」로 국내 생산의 약 1/4를 담당해왔다. 한편, 육질의 불균형이나 실제 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력의 약하다는 점 등이 과제로 대두되어, 지역에서 생산한 쇠고기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부터 판매점 점포 앞에서도 생산이력제도가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안심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 2) 유용종 소의 쇠고기 생산 담당자는 낙농, 육성비육 경영자 이다. 이들 각 단계에서 사육 관리기술 향상을 통해 육질 최저 수준을 높이고 생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절감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생산자 사이드가 실제 수요자의 요구를 확실하게 파악한 후, 생산이력추적제도를 핵으로 한 생산 이력정보 제공을 비롯한 적극적인 판매 촉진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국내산 쇠고기의 새로운 고객 확보를 추진한다.

3.5.2. 국내산 쇠고기 시장 개척 긴급 대책 사업의 내용

중앙단계에서는 유용종 소의 쇠고기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전국적인 판매 전략 수립, 사육 관리 기술 매뉴얼 작성·보급 등 중앙 검토회의 개최 등을 수행한다. 지역단계에서는 실제 수요자와의 거래 계약에 대응한 효과적인 생산·공급 체제를 구축하고, 유리한 판매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첫째, 지역의 판매 전략 수립 사업이다. 지역 브랜드의 확립을 진행시키기 위해 실제 수요자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다음, 지역의 실정을 최대한 발휘하여 얻는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 둘째, 각 단계에서의 사육관리 기술 향상이다. 즉, 사육관리 기술 연수회 개최, 각 단계에서의 사육관리 기술 고도화에 이바지하는 기기의 정비 등의 수행에 지원한다. 셋째, 생산 이력정보 제공 체제의 정비이다. 생산이력추적제도를 중심으로 사료급여, 위생관리 등의 생산이력정보를 공개 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 넷째, 판매촉진 활동의 실시이다. 지역의 판매 전략에 근거한 판매촉진 활동 실시, 실제 수요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가공처리기기의 정비 등을 수행하는데 지원한다.

사업의 실시 주체는 전국 육용우진흥기금협회와 (재) 일식고기소비종합센터 그리고

(사)중앙축산회, 도도부현(都道府縣) 단체, 농협, 농협련 등이다.

사업의 보조율은 정책이며, 사업비의 1/2 이내에서 결정한다.

3.6. 축산관측사업

일본이 축산관측사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육돈 생산출하 예측사업이다. 정부는 월별로 1개월 후부터 6개월 내까지의 출하두수를 예측 발표한다. 정부는 앞으로의 월별 출하두수에 따라 돼지고기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과부족을 판단하고, 업체는 수입량 등을 판단하여 수입량을 조절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011년부터는 농축산업진흥기구를 통해 돼지 사육두수 및 돼지고기 공급량 단기관측도 실시하고 있다.

2004~2005년의 월별 출하예측두수와 전국 도축두수를 월별로 검토해 보면 2004년 월별 평균 예측두수를 1,363천두에 비해 도축두수는 1,381천두로 101.4%였고, 2005년 도의 출하예측두수와 도축두수가 100%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 월별은 98~108%, 2005년 월별은 93~107%의 차이가 있다.

표 4 월별 출하예측 대 실제 도축두수

단위: 천 두

구 분		2	4	6	8	10	12	평 균
'04	예측두수	1,281	1,338	1,281	1,292	1,522	1,523	1,363
	도축두수	1,324	1,418	1,322	1,268	1,615	1,531	1,381
	대 비	103	106	103	98	106	100	101
'05	예측두수	1,307	1,351	1,267	1,295	1,489	1,497	1,362
	도축두수	1,398	1,314	1,287	1,297	1,381	1,503	1,362
	대 비	107	97	101	100	93	100	100

자료: 2006 식육관련자료(농림수산성 생산국).

둘째, 돼지고기 소비동향 분석사업이다. 일본의 농축산업진흥기구는 월별로 가계소비, 가공육, 요식업소의 소비량을 조사한다. 가계소비는 총무성 통계국이 전국 세대당 육류별 소비량과 금액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소비량을 추정하고, 가공원료육은 사단법인 육가공협회 회원사가 월간 원료육 구입량과 제품별 생산량을 조사한 수치가 제시되고 있다. 요식업소 소비량은 전체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에서 가정소비와 가공원료의 합계를 제외해서 산출함으로써 소비동향을 분석하여 월별 수급사항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다.

3.7. 자율적 적정 수입량 조절(자율적 수입 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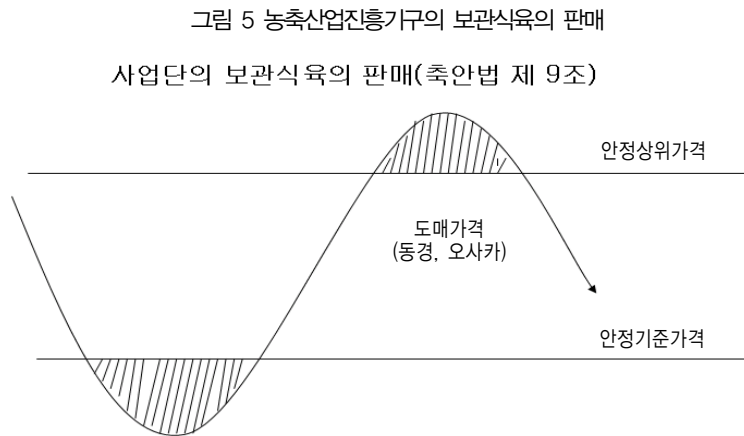
적정 수입량의 조절을 위해 일본은 자국산 돼지고기의 1~6개월 후의 출하예측 발표 자료에 따라 1~3개월 후까지의 수입량을 추정하여, 수요와 공급량을 감안하여 수입량을 조정하고 있다. 수입량 조정도 농축산업진흥기구와 일본 육류수출입협회가 매월 수입 예정량을 업계로부터 받아 집계하고, 앞으로 월별 수입량 과다 여부를 분석 검토 후 각 수입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돼지고기의 재고량은 수입량의 3개월분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3개월 후의 수입량 조절을 하더라도 큰 착오는 없다.

4. 주요 육류 수급 및 가격 정책의 내용

4.1. 지정식육 가격안정제도

4.1.1. 축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1943년 5월 27일 법률 제5813호)은 주요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축산 및 기타 관련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여 국민의 식생활 안정과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생산자단체의 조정보관(금리, 창고료 등을 사업단지지원(축안법 제6조 3항))
- 2) 사업단의 지정식육의 수매보관(축안법 제7조 2항)

자료: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홈페이지(www.alic.go.jp)

4.1.2. 지정식육 가격안정제도 개요

지정식육이란 돼지고기, 쇠고기, 기타 정령이 정하는 식육으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규격에 해당하여야 하고, 돼지고기의 규격은 성령 제3조 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격변동 폭을 최소로 축소하는 것이 목표이며, 농축산업진흥기구가 식육공급량을 조정하는 방법에 개입한다.

수급조절의 목표가격으로서 안정 기준가격 및 안정 상위가격을 매년 정부가 정하여 공포한다. 시가가 안정대가격(안정상위가격과 안정기준가격 사이)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농축산업진흥기구는 수매 비축·방출로써 가격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생산자 단체에 의해 자주 조정할 수 있다(그림 5).

4.1.3. 안정가격의 결정

안정가격은 식육의 가격안정의 목표가격을 하회한 가격 하락방지를 목적으로 한 “안정기준가격”과 기준가격을 상회한 가격 폭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안정상위가격”으로 정하여 이 양자의 가격대를 통상 “안정가격대”라고 한다.

가격 결정의 단위는 반도체 지육 1kg로 정형한 지육을 기준으로 하며, 안정가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기준기간(최근 5년간)중 농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생산비 동향을 감한하여 산출한다.

$$\text{안정가격} = \left[\begin{matrix} \text{(A)} \\ \left(\begin{matrix} \text{기준기간의} \\ \text{육돈 농가} \\ \text{판매가격} \end{matrix} \right) \end{matrix} \right] \times \left[\begin{matrix} \text{(B)} \\ \frac{\text{가격산정년도의} \\ \text{예상되는 육돈 생산비}}{\text{기준기간의 육돈 생산비}} \end{matrix} \right] \times \left[\begin{matrix} \text{(C)} \\ \left(\begin{matrix} \text{지} & \text{육} \\ \text{환산계수} \end{matrix} \right) \end{matrix} \right] \times \left[\begin{matrix} \text{(D)} \\ (1 + \text{변동계수}) \end{matrix} \right]$$

(A) 기준기간의 농가 판매가격(최근 5년 평균)

(B) 기준기간의 평균 가격에 대한 가격 산정년도의 예상되는 가격 변화율

(C) 생체로부터 지육으로 환산되는 계수

(D) 통상의 가격변동 폭

이 사업의 사업실시 주체는 전국 또는 지역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식육가공 또

는 판매를 행하는 사업자(전국, 현)를 구성원으로 한다.

이 사업의 내용은 돼지가격 회복까지 국산 돼지고기를 보관하는 사업으로 한다. 사업의 실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보관계획의 작성: 전국 현은 돈육가격안전 긴급대책사업 돼지고기 보관계획 승인 신청서를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에 제출·승인을 받는다(보관운수, 수매기간).
- ② 보관대상 돼지고기: 보관대상 돼지고기는 일본 식육격부협회(우리나라의 축산물 품질관리원에 해당)가 등급판정 한 극상, 또는 상 규격의 지육으로 한다.
- ③ 매입장소 및 가격: 보관 돼지고기의 매입장소는 중앙도매시장이며, 지정시장의 경매가격으로 매입한다.
- ④ 보관장소: 식품위생법 제 21조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허가한 창고 또는 중앙도매시장, 지정시장의 영하 20℃의 냉동 창고를 보관 장소로 한다.
- ⑤ 판매 기일 및 장소: 농축산업진흥기구의 이사장이 정하는 기일과 장소에서 지정한 판매방법으로 실시한다.
- ⑥ 보조기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리 보관 창고비를 지원한다.

4.2. 육돈 생산 수급 및 가격안정 사업

4.2.1. 지역 육돈 생산기금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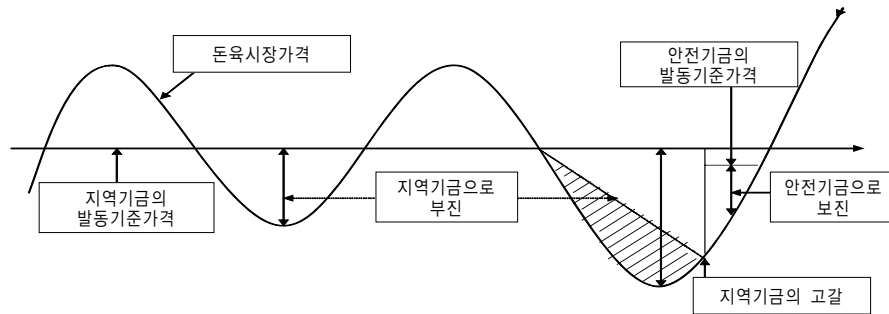
1) 사업의 목적

돼지고기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도부현 단위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육돈 생산자가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경영안정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조성을 지원한다. 이 기금을 통하여 비육돈의 이상 하락에 대응한 양돈경영의 세이프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돼지고기의 안정적 공급과 양돈경영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2) 사업의 내용

도도부현 단계에서 생산자 등이 자주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육돈의 가격차액보전사업에 대하여 생산자 적립금이 부족할 시에 보충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육돈생산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림 6 돼지고기 시장가격과 보전관계



자료: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홈페이지(www.alic.g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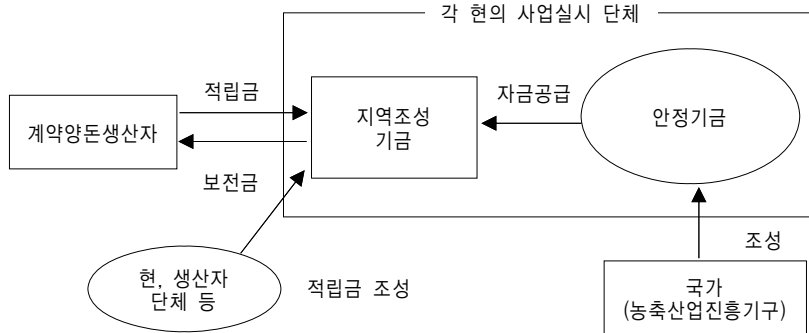
각 도도부현별로 정한 ‘안전기금 발동기준 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낮은 경우 우선 생산자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보전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지역육돈생산안정기금’에서 부족한 금액의 자금을 공급한다(그림 6). 소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text{안전기금 발동 기준가격(엔/kg)} - \text{성령별 평균가격}) \times \text{지육중량} \times \text{대상두수}$$

2007년도 이후부터는 지원대상자를 인정 농업자(농업후계자)만을 기본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조성기금과 안정기금과는 아래 <그림 7>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즉, 돼지고기 가격이 일정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생산자가 자주적으로 적립한 지역기금(地域基金)이 소진 되었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정 기금으로 지원한다.

그림 7 지역조성기금과 안정기금의 관계



자료: 일본 농림수산업성 홈페이지(www.maff.go.jp)

4.2.2. 지역육돈 생산안정기금 조성사업의 보험설계

1) 보험설계의 제원(諸元)

- ① 보전금 대상육돈(규격 등)
- ② 지역보증가격(지역육돈생산기금조성사업 발동기준가격)
- ③ 지표가격의 산술기초
 - 시장 : 동경 오사카 시장가 중 평균가격
 - 규격 : 성령 상등급 이상
- ④ 보전 계산기간 : 매월
- ⑤ 지육 중량 : 75kg
- ⑥ 보전을 및 보전 한도액은 제한 없음

2) 보험설계상의 생산자 적립금 단가

다음 <표 5>의 보전금 합계(B)를 월내 보전기일 ④의 합계 C 수치에 지육중량을 곱하면 생산자 두당 적립금이 계산된다.

$$\text{보험설계상 생산자 적립단가} = \frac{(B)}{(C)} \times (\text{지육중량})$$

$$\text{보험설계상 생산자 적립단가} = 422,505 \div 101,928 \times 75\text{kg} = 311\text{엔/두}$$

표 5 보험설계상의 생산자 적립금 산출방법 예시

구 분	월 별						
	2	4	6	8	10	12	합계
월별 출하 두수	1,376	1,361	1,279	1,291	1,472	1,531	131,598
월별출하지수(A)	1,066	1,055	0,991	1,000	1,141	1,186	12,741
보전금단가 ② (지역육돈생산조정기금 발동기준가격-평균가격)	65	0.00	0.00	10	73	61	372
②×A	69,290	0.000	0.000	10,000	83,293	72,346	422,505(B)
보전기간수 ③	3	0	0	1	4	3	17
월 별 일수 ④	8	8	8	8	8	8	96
④×A	8,528	8,440	7,928	8,000	9,128	9,488	101,928(C)

주: (B)는 월별 출하량을 고려한 지육 kg당 생산자 적립금 예상금액의 개념에 해당하며, (C)는 보험이 적용되는 기간(총 96 일)의 평균적인 출하두수 비중을 의미함. 따라서 생산자 적립단가는 월별 출하비중을 고려한 금액임.
 자료: 2006.10.31. 지역육돈 생산안정기금 조성사업 회의자료 NO.6 일본 농림수산성.

4.2.3. 지역 양돈진흥특별대책사업

1) 사업목적

수입 돼지고기와 경쟁할 수 있도록 국산 돼지고기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화를 위한 각 지역별 육돈생산진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양돈산업을 안정시킨다.

2) 사업 내용

중앙에서는 지역양돈진흥촉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연락조정 및 지역별 우수 사례 등을 개발 보급한다.

도도부현 단계에서는 지역양돈생산 진흥, 안정적 생산유통체계를 위해 육돈 생산 진흥 생산효율 증진을 위한 기구 및 시설정비, 지역적 육돈의 브랜드화 촉진, 고부가가치 돼지고기의 생산체계 확립, 수급완화의 지역 소비촉진 사업 등에 대한 지도를 실시한다.

사업의 실시주체는 (사)일본양돈협회, 도도부현 단체, 농업협동조합 등이다.

4.2.4. 축산 통계 관련 사업

1) 생산 및 수입량 예측

일본 농림수산성은 전국 34개 도현에 육돈 생산출하전국협의회를 구성, 조사 대상농가는 12개월 번식돈 두수, 종부두수, 분만모돈 두수, 생산자돈 수, 이유자돈 수, 출하두수, 총 사육두수, 2개월령, 4개월령, 6개월령 사육두수와 현내 배합사료 판매량, 출하 예정 두수 등을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1~6개월 후까지의 수급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2) 출하두수, 수입량, 소비량 조사

일본은 1~6개월 후까지의 비육돈 출하두수, 1~3개월 후까지의 냉동, 냉장육별 수입량을 조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급계획과 동시에 상시 월소비량을 조사하고 있다.

3) 국내생산 수입량, 재고량 조사

일본은 1~6개월 후의 월별 비육돈출하두수, 1~3개월 후까지의 냉동·냉장육별 수입량을 조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급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상시 월소비량의 150%(1.5개월분)를 재고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수급량을 조정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5. 축산물 유통 압리와 지원 정책

농업종사자들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가축의 생산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나아가 고령화의 진전과 국민의 건강지향 의식 고조 등을 배경으로 식육의 소비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소비자, 실수요자의 니즈에 대응하여 국내산 육류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 구축이 일본 축산 정책의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축 및 식육 등의 유통 및 처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식육유통처리시설(산지식육센터, 가공육 및 계란 처리시설, 가축시장) 재편 등을 도모함으로써 축산물의 산지 수익력 향상과 체질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의 축산물유통합리화 지원 정책은 산지 활성화 종합대책 사업 중 산지 수익력 향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식육유통합리화지구를 설정하고 이 지역에 한하여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정책의 목표는 식육 등의 유통 비용 절감에 의한 산지의 수익력 향상을 통한 생산수량 목표 달성에 두고 있다. 즉, 2020년 목표는 쇠고기 52만 톤, 돼지고기 126만 톤, 닭고기 138만 톤, 계란 245만 톤이다.

이 대책의 포인트는 축산물 산지에서 수익성 향상과 체질 강화, 국내산 육류의 안정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 및 육류의 유통합리화 및 효율화를 향한 유통처리시설 재편 등의 계획을 지원한다는 데 두고 있다.

이 정책의 사업비는 2011년에는 123억 3,100만 엔이 적용하였지만, 2012년에는 전년에 비해 반 이상 감소된 52억 8,800만 엔 이내에서 결정되었다. 축산물 유통합리화 지원정책의 세부 사업으로는 강한 농업만들기 지원금이 2011년 20억 9,300만 엔으로 지난해 31억 2,700만 엔보다 감소하였고, 산지 재생관련 시설 긴급정비 사업은 2012년 신규로 95억 엔 이내에서 적용된다.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식육 등 유통합리화를 위한 시설 재편 통합에 지원

식육유통 합리화 지구 내에서 실시하는 산지 활성화 종합대책 사업 중 산지 수익력 향상 지원 사업으로 2012년에는 52억 8,800만 엔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전년도 123억 3,100만 엔보다 감소한 것이다. 사업의 보조율은 사업비의 1/2, 1/3, 1/10 이내 등 다양하며, 사업의 실시주체는 시정촌(市町村, 일본의 지역 단위), 농업자단체 등이다.

- 지방의 자주성, 재량성 제고 지원금

안전하고 품질 좋은 국내산 육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위생관리 향상,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수출 대응 등에 필요한 식육 유통처리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강한 농업만들기 지원금이 2012년 20억 9,300만 엔으로 전년도 31억 2,700만 엔에 비해 감소하였다. 지원비율은 도도부현에 지원하는 경우 정액이며, 사업실시주체에게는 사업비의 1/2, 1/3 이내에서 지원한다. 사업의 실시주체는 도도부현, 시정촌, 농업자단체 등이다.

2011년 실시된 이 지원금 메뉴 중 지역 자주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식육유통처리시설 재편정비는 지역자주전략 지원금으로 이행되었다.

- 수출입의 급격한 변동 등에 대응하는 계획에 대한 지원

엔화 가치 상승의 진행에 따라 수입의 급증 또는 수출 감소된 축산물에 대하여 산지 체질 강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식육유통처리시설 정비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산지의 농업 생산비 절감, 고품질화, 고부가가치화에 의한 안정적인 생산 등을 위한 계획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지 재생 관련시설 긴급 정비사업으로 2012년 신규 편성된 예산은 95억 엔 이다. 이 사업의 보조율은 사업비의 1/2 이내이며, 사업의 실시주체는 도도부현, 시정촌, 농업자단체 등이다.

6. 쇠고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

6.1. 일본의 육용우 정책사업

6.1.1. 송아지 생산 확대 장려 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송아지 가격이 떨어질 때 번식 암소두수를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자에게 장려금을 교부함으로써, 육용 전용종 번식경영에서의 송아지생산 확대의욕 제고를 도모하여 국내 육용우 자원 확대에 이바지한다는데 두고 있다.

송아지 가격이 아래 <표 6>과 같은 발동기준을 밑도는 경우에는 육용 전용종 번식 암소두수를 증가시키는 자 및 유지시키는 자에게 판매 또는 자가 보류된 송아지 1두당 아래와 같은 장려금을 교부한다(2009년 기준).

사업의 실시 주체는 (사) 전국육용우진흥기금협회이며, 보조율은 정액이다.

표 6 송아지 생산 확대 장력사업의 주요 내용, 2009

단가(송아지 1마리당) 품종 발동 기준	증두자 (확대 장려금)	유지자 (생산 장려금)
〈흑모화우종 기준〉		
35만 엔을 밀돌았을 경우	10천 엔	7천 엔
34만 엔을 밀돌았을 경우	20천 엔	15천 엔
33만 엔을 밀돌았을 경우	30천 엔	22천 엔
32만 엔을 밀돌았을 경우	40천 엔	30천 엔
31만 엔을 밀돌았을 경우	45천 엔	34천 엔
〈일본 재래소 기준〉		
32만 엔을 밀돌았을 경우	25천 엔	
29만 엔을 밀돌았을 경우	16천 엔	
그 외의 23만 엔을 밀돌았을 경우	19천 엔	
〈육용전용종〉		
21.1만 엔을 밀돌았을 경우	12천 엔	

주: 송아지 가격은 육용송아지 생산자보급금제도에 정해진 지정시장의 평균 매매가격(4분기마다)으로 한다.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6.1.2. 육용우비육경영 안정대책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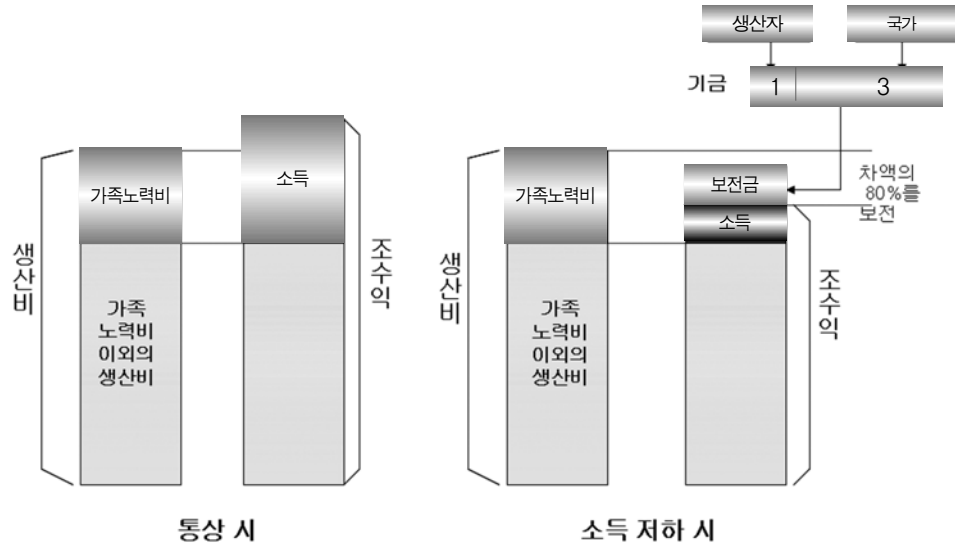
이 사업의 목적은 육용우 비육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생산자가 거출한 자금과 국가가 조성한 금액으로 기금을 만들어, 수익성이 악화되었을 때 가족노력비를 보전하는 데 두고 있다. 사업의 내용은 아래 <표 7> 및 <그림 8>과 같다.

표 7 육용우 비육경영 안정대책 사업의 주요 내용(2009년 기준)

구 분	내 용
도도부현마다 비육우 1두당 추정소득이 기준 가족노력비를 밀돌 경우, 그 수준에 따라 4분기마다 비육우 생산자에게 보전금을 지원한다	① 거출비율: 생산자 : 국가 = 1 : 3 ② 사업 실시기간: 2007년 ~ 2009년도(3년간) ③ 발동기준: 가족노력비(최근 3개년 평균 가족노력비) ④ 보전비율기준: 가족노력비와 4분기 평균추정소득과의 차액분의 80% ⑤ 대상 품종: 육용전용종, 교잡종, 유용종의 3구분(필요에 따라 갈모·단각의 설정도 가능) ⑥ 생산자 적립금: 도도부현 마다 금액을 결정 ⑦ 사업 대상: 경영인정농업자 및 인정농업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그림 8 육용우 비육경영 안정대책 사업의 개요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이 사업의 실시주체는 (사) 중앙축산회, 도도부현 단체이며, 2009년 예산은 148억 8,700만 엔이었으며, 지원율은 정액으로 사업비의 3/4 이내에서 결정된다.

6.1.3. 육용 송아지 대책

쇠고기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용 송아지 생산안정 등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쇠고기 등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한 육용 송아지 대책을 실시하였다. 육용 송아지 대책이란 1991년도부터 쇠고기 수입 자유화와 이후 대폭적인 관세율 인하에 대처하여, 자유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쇠고기 및 그 외 육류의 국내 공급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육용 송아지 생산자 보조금(지원금) 제도를 비롯한 생산, 유통, 가공, 소비에 걸친 제반 시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시책을 총칭하여 육용 송아지 대책이라고 한다.

이 정책의 목표는 육용 송아지 생산 안정과 그 밖에 식육과 관련된 축산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의한 농업 경영 안정에 두고 있다.

이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육용송아지 대책 사업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국가에 의한 시책	육용우 생산 합리화, 식육 등의 유통 합리화, 그 외 식육과 관련된 축산 진흥에 기여하는 시책을 실시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의 업무	육용송아지 생산자 보급교부금 교부, 식육의 매입 조정보관, 정보 수집, 기타 축산 진흥에 기여하는 사업을 실시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육용 송아지 대책의 2009년 예산은 800억 엔으로 전년도에 비해 70억 엔 감소하였다. 그 중 육용송아지 생산자 지원금 등 업무 예산은 2012년의 경우 212억 9,000만 엔이다. 지원율은 정액이며, 사업비의 1/2 이내에서 결정된다. 사업의 실시주체는 지정협회이며 도도부현의 육용송아지 가격안정기금협회이다.

6.1.4. 비육우생산자 수익성 저하 긴급 대책 사업(2009년 신규, 마루킨 사업 보완대책)

육용우 비육경영에 대하여 지육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비육용으로 사용하는 송아지의 가격은 급등함과 더불어 배합사료 가격의 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 특히 유용종 비육경영에서는 물재비 조차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물재비 이하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긴급하게 보전하는 특별 대책으로 2009년부터 실시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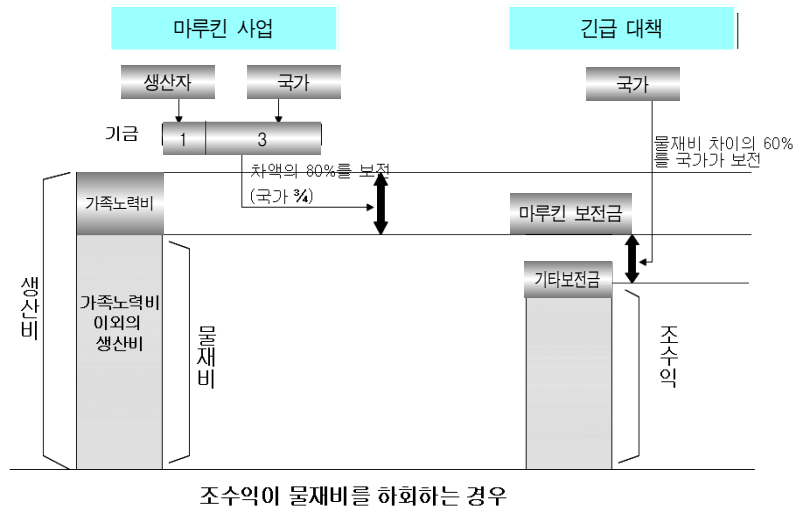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9> 및 <그림 9>에 요약하였다. 이 사업의 실시 주체는 (사) 중앙축산회이며, 2009년 사업비는 39억 9500만 엔으로 보조율은 정액이다. 사업은 2008~2009년에 걸쳐 실시되었다.

표 9 비육우 생산자수익성 저하 긴급대책 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비육우생산자 수익성 저하 긴급 대책 사업	① 전국 평균으로 품종 구분마다 비육우 1두당 4분기 추정소득이 마이너스(조수익이 가족 노력비를 제외한 생산비를 밀도는 것)가 되었을 경우, 육용우비육경영 안정대책사업(마루킨 사업)의 계약생산자이며, 계획적으로 생산성을 향상하는 비육우 생산자에 대해 그 마이너스 분의 60%(보전을 80% 국가 부담분 3/4) 정도의 보전을 실시 ② 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검토회의 개최와 지도 등을 실시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그림 9 비육우 생산자수익성 저하 긴급대책 사업의 개요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6.1.5. 육용우 생산성향상 긴급대책사업(2009년 신규)

육용우 경영에 있어 사료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번식성적 향상과 사고율 하락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문에 각 지역에서 육용우 생산성 향상 목표를 설정하여 이들 목표를 지역이 달성해 나가기 위한 계획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육용우 경영의 체질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이 사업이 실시되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0>에 요약한 바와 같으며, 사업의 실시주체는 (사) 전국육용우진흥기금협회이다. 2009년 기준 예산은 11억 9,200만 엔이며, 보조율은 정액으로 사업비의 1/2 이내에서 결정된다. 이 사업은 2008년~2009년도에 걸쳐 실시되었다.

표 10 육용우 생산성향상 긴급대책 사업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육용우생산성 향상 추진대책	육용우 생산성 향상 목표설정을 위한 검토회와 기술보급을 위한 연수회 개최, 현지 지도 등의 실시
	지역에서의 육용우 생산성 향상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구, 기자재 정비 등을 지원 ① 암소 번식성 향상 대책 분만간격 단축과 수태율 향상 등 번식성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배 및 분만 번식 정보 등의 수집 분석, 발정 발견기와 발정 동기제 등 도입 ② 육용우 사고율 저하 대책 육용우 사고율 저하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분만감시 장치, 냉각용 분무 장치, 집단 포육용 파이프 하우스 축사, 위생 자재 등 도입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6.1.6. 육용우번식 기반 강화 종합 대책 사업

육용우 생산기반은 소규모·고령자층의 이탈에 의해 약화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가축 개량기반 축소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번식암소 도입을 비롯한 육용 번식암소 사육규모 확대에 기여하는 대책을 중심으로 신규 참가, 개량증식 대책, 지역의 특색 있는 육용우 진흥 대책을 실시하여 육용우 생산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1>에 요약한 바와 같다.

표 11 육용우 번식반 강화 종합대책 사업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신규 참가 원활화 대책	번식경영에 신규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농협이 사육관리시설 등의 정비를 실시하고, 신규 참가자에 대부를 하는 경우에 지원을 실시
육용우 개량 증식 강화 대책	우량종모우 작출 및 광역 이용을 위해 우량한 육종자원 확보·이용, 집중적인 후대검정 등을 실시
육용우 번식암소 능력 평가 대책	식암소의 능력평가 추진을 위해 지육정보 수집, 분석, 제공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후보종모우 생산을 위한 우량 암소 확보, 후대검정 추진을 위한 보급 계발 및 광역적인 종모우 평가 추진 등을 실시
육용우 사육규모 증대 강화 대책	번식암소의 사육규모 증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생산자 집단 등이 스스로 증두 목표 등을 포함한 지역증두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을 실시 ① 번식암소 도입 추진 ② 낙농 경영을 활용한 육용우 증두 ③ 원활한 암소 계승 ④ 증두에 기여하는 기구 및 기자재 등의 도입 ⑤ 유휴 농지 등을 활용한 방목 추진 ⑥ 공공목장 초지자원 이용 및 활용 촉진
지역의 특색 있는 육용우 진흥 대책	지역의 특색 있는 육용우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
육용우 진흥 추진 지도	사업 1)과 2)를 제외한 상기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추진회의 개최, 계획 수립, 연락 조정, 조사, 지도, 연수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낙농지역이나 논지역 등 새롭게 육용우 생산을 꾀하는 지역에서의 기술지도 등을 실시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 maff.go.jp)

사업의 실시주체는 농협 등, (사) 중앙축산회, (사) 가축개량사업단, (사) 전국육용우 진흥기금협회, (사) 일본초지축산종자협회 등 이다. 2009년 기준 사업비는 44억 5,100만 엔이며, 보조율은 정액으로 사업비의 1/2 이내에서 결정된다.

6.1.7. 축산·낙농 경영안정대책

이 정책의 포인트는 각 축종의 특성에 따라 축산·낙농 경영의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의욕이 있는 모든 생산자가 장래에도 경영을 계속하고, 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데 있다. 낙농, 육용우 번식, 육용우 비육, 양돈 및 채란 양계의 각 경

영안정대책으로 2010년부터 2011년도에 축종마다 특성에 대응한 개선과 새로운 지원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대책을 위해서는 계속 안정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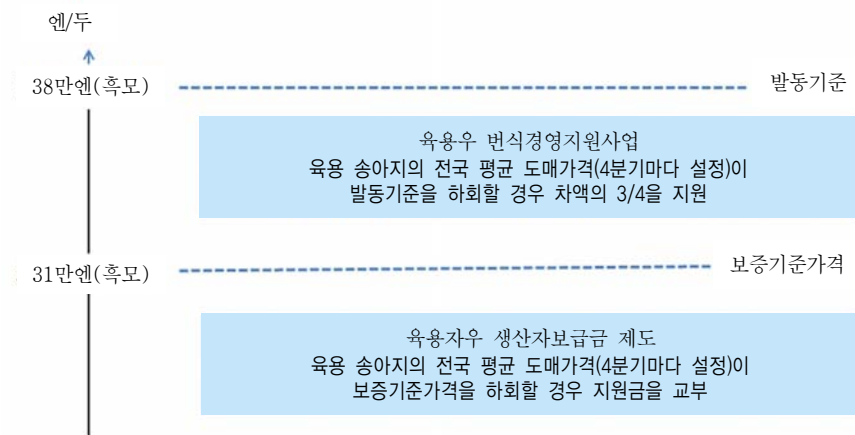
이 정책의 목표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 생산량 2008년 각각 52만 톤, 126만 톤에서 2020년 52만 톤, 126만 톤 유지(원유는 2008년 795만 톤에서 2020년 800만 톤 목표, 계란은 2008년 255만 톤에서 2020년 245만 톤 목표)에 두고 있다. 2012년 총 예산액은 1,738억 7,100만 엔으로 전년도 1,670억 2,400백만 엔에 비해 4.1% 증가하였다. 이 사업은 육용우번식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과 육용우비육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그리고 양돈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및 낙농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육용우 번식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육용 송아지 가격이 보증기준가격을 하회할 경우 생산자 보급금과 함께 고기 전용 중 송아지 가격이 발동기준을 밑돌 경우 차액의 3/4을 지원한다. 육용 송아지 생산자 지원금 소요액은 2012년의 경우 212억 9,000만 엔으로 전년도 230억 1,600만 엔에 비해 7.5% 감소하였으며, 육용우 번식경영 지원 사업 소요액은 2012년 133억 1,200만 엔으로 전년도 142억 2,600만 엔에 비해 6.4% 감소하였다.

이 사업의 실시주체는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와 도도부현 지역을 범위로 하는 민간단체이다.

그림 10 육용우 번식경영대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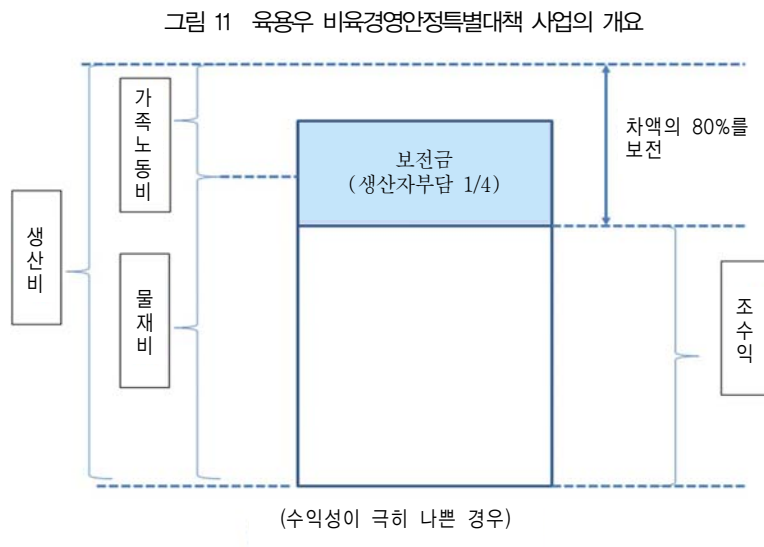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2) 육용우비육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이 사업은 비육우 1두당 조수익(전국 평균)이 생산비(전국 평균)을 하회할 경우, 차액의 80%를 보전금으로 지원한다. 육용우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의 소요액은 2012년의 경우 869억 4,200만 엔으로 전년도 772억 8,000만 엔에 비해 12.5% 증가하였다.

이 사업의 보조율은 사업비 3/4 이내에서 정액으로 결정된다. 사업의 실시주체는 농축산업진흥기구, 도도부형 지역을 범위로 하는 민간단체, 비육우생산자 등이다.

이 사업의 내용을 도식화한 것이 아래 <그림 11>이다.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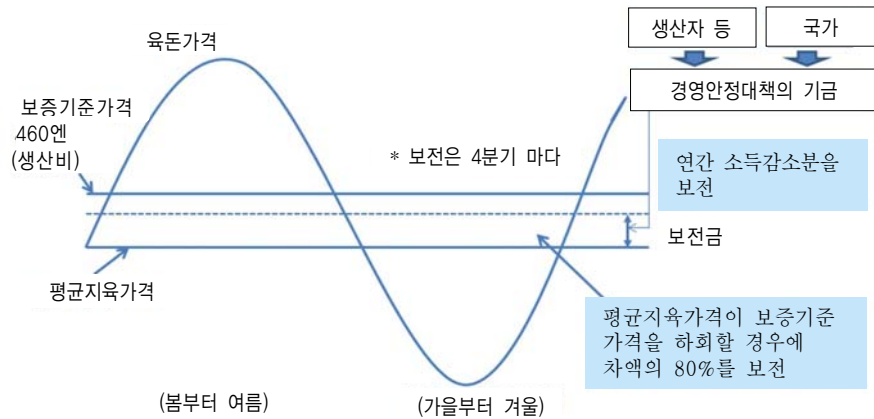
3) 양돈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이 사업은 돼지 지육의 전국 평균가격이 생산비에 상당하는 보증기준가격을 하회할 경우, 차액의 80%를 보전금으로 지원한다. 2012년 양돈경영안정대책사업 소요액은 99억 6,600만 엔으로 전년도 100억 700만 엔에 비해 4.1% 감소하였다.

이 사업의 보조율은 사업비의 1/2 이내에서 정액으로 결정된다. 사업의 실시주체는 농축산업진흥기구와 육돈생산자이다.

사업의 내용을 도식화 해 보면 아래 <그림 12>과 같다.

그림 12 양돈경영안정대책 사업의 개요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6.1.8. 다양한 축산경영의 추진과 경쟁력 강화

사료가격의 변동, 축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경영환경 하에서 일본 축산생산기반 유지 및 소비자·수요자 니즈(needs)에 대응하는 국산 축산물의 안정공급체계 구축이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축산물 생산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등의 정비, 신규 취업 등에 필요한 기계 등의 리스, 축산농가의 자기 판단에 의한 경영의 다각화·다양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체제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하였다. 이 정책이 다양한 축산경영의 추진과 경쟁력 강화 정책이다.

이 대책은 첫 번째 국민에게 축산물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경영의 생산성,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지원하고, 두 번째 급격한 엔화절상에 의한 수입 급증과 수출의 감소, 이상 기상에 의한 단수, 품질 저하 등을 초래하는 작목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등의 정비를 긴급히 지원하며, 세 번째 일본 축산생산기반 유지 및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족경영의 유지안정과 신규 취업농 등을 촉진하고, 네 번째 축산농가의 자기 판단에 의한 경영의 고도화, 다양화 등을 촉진하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다.

이 정책의 예산은 강한 농업만들기 지원금으로 2012년 20억 9,300만 엔(2011년 31억 2,700만 엔) 이내이며, 산지 재생 관련시설 긴급정비 사업으로 95억 엔(2012년 신규) 이내, 산지 활성화 종합대책 사업 중 농축산업 기계 등 리스 지원 사업(축산신규취농 지원형) 예산이 52억 8,800만 엔(2011년 123억 3,100만 엔) 이내, 다양한 축산·낙농추진사

업 중 축산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으로 7,400만 엔(2011년 11억 3,000만 엔) 이다.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방의 자주성·재량성을 높이는 교부금을 지원

축산생산기반 육성 강화를 위해 (1) 지역내 일관생산체계 확립, 송아지 생산부문의 협업화와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외부화·분업화, (2) 지역의 핵이 되는 협업법인 경영체 육성, (3) 축산경영을 원활하게 계승하기 위한 이농 후 남겨진 토지 등의 조건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강한 농업만들기 교부금의 교부율의 경우 도도부현의 교부율은 정액이며, 사업의 실시주체에게는 사업비의 1/2 이내 등으로 정하고 있다. 사업의 실시주체는 농업자단체 등이다.

- 수출입의 급격한 변동 및 이상 기상의 영향에 대응한 계획을 지원

엔화가치 절상에 따라 수입이 급증 또는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축산물, 이상 기상의 영향으로 단수나 품질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하여, 산지의 체질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축산물 공동이용 시설 등의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산지의 농업생산의 저비용화, 고품질화, 고부가가치화에 의한 안정 생산 등을 향한 계획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보조율은 정액이며, 사업비의 1/2 이내 등에서 정하고 있다. 사업의 실시주체는 도도부현, 시정촌, 농업자단체 등이다.

- 신규취농자 등에 기계 등의 리스 지원

시설, 기계 등의 초기 투자액이 매우 큰 축산경영에 있어서 신규 취농에 필요한 기계 등의 리스방식에 의한 도입지원에 의해 축산의 신규 취농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보조율은 정액이며, 대여료 중 물건구입 상당의 1/2 이내에서 지원된다. 사업의 실시주체는 민간단체이다.

- 축산경영고도화·다양화 촉진 계획 지원

축산농가의 자기 판단에 의한 경영의 다각화·다양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목표로 하는 경영을 실현토록 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보조율은 정액이며, 사업의 실시주체는 민간단체이다.

6.2. 사료 자급을 향상 대책

일본에서는 사료 자급을 향상을 위한 정책 목표를 2008년 26%에서 2020년 38%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6.2.1. 사료증산 종합대책 사업

사료증산 종합대책 사업의 2012년 총예산은 17억 1,000만 엔(2011년 23억 3,400만 엔)이다. 이 중 첫째, 사료생산조직 육성을 생산면적에 대응하여 지원하는 데 9억 1,100만 엔(2011년 12억 1,400만 엔)이 편성되어 있다. 이 사업의 보조율은 정액이며, 사업의 실시주체는 농업자, 사료생산조직 등이다. 둘째, 초지 개량 및 우량사료작물 종자의 안정 공급사업의 2012년 예산은 6억 엔(2011년 7억 6,000만 엔)으로, 보조율은 정액, 1/2, 1/3 등이며, 사업의 실시주체는 민간단체 등이다. 셋째, TMR(Total Mixed Ration, 섬유질 배합사료)공장에서의 남은 음식물 사료이용 확대 및 식품산업과 축산농가 매칭,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실증사업비는 2012년 6,700만 엔(2011년 1억 엔)으로, 보조율은 정액, 1/2이며, 사업의 실시주체는 민간단체이다. 넷째, 쌀겨 등 작물 중 농약잔류시험 및 축산물 중 잔류시험사업으로 2012년 1억 3,200만 엔(2011년 2억 6,100만 엔)이 편성되어 있으며, 보조율은 정액이고, 사업의 실시주체는 민간단체이다.

6.2.2. 농업농촌정비사업 중 생산국 관계 사업

농업농촌정비사업 중 생산국 관계 사업의 2012년 예산은 325억 5,500만 엔(2011년 330억 4,100만 엔) 이내에서 편성되어 있다.

6.2.3. 농업자 호별 소득보상제도(농 활용 소득보상 지원금)

농업자 호별 소득보상제도(농 활용 소득보상 지원금)의 2012년 예산은 2,284억 3,100만 엔(2011년 2,284억 3,100만 엔) 이내에서 편성되어 있다.

6.2.4. 산지 활성화 종합대책 사업

산지 활성화 종합대책 사업은 자급율 향상 중점지원 사업 중 사료생산거점 육성형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2년 예산은 52억 8,800만 엔(2011년 123억 3,100만 엔)이다.

산지활성화 종합대책 중 자급율 향상을 위한 사료생산 확대 계획에 대한 지원(대체 확충) 사업의 보조율은 1/2, 1/3 이내 등이며, 사업의 실시주체는 협의회, 민간단체 등이다.

6.2.5. 강한농업 만들기 지원금

강한농업 만들기 지원금의 2012년 예산은 20억 9,300만 엔(2011년 31억 2,700만 엔) 이내에서 편성되어 있다. 한편, 지역 자주전략 교부금에서 거출되는 금액은 36억 9,700만 엔 이내이다.

이 사업은 간이 작부조건 정비 등 사료기반 정비, 방목관련 시설과 사료가공, 유통, 보관시설 정비 등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율은 도도부현으로 지원하는 비율은 정액이지만, 사업의 실시주체에게는 사업비의 1/2 이내에서 지원된다. 이 사업의 실시주체는 도도부현, 시정촌, 농업자가 조직한 단체 등이다.

6.2.6. 산지재생 관련 시설 긴급 정비 사업

이 사업은 산지 체질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등(자급사료보관가공시설 등)의 정비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산지재생 관련 시설 긴급 정비 사업 예산은 95억 엔(2012년 신규) 이내에서 편성되어 있다. 이 사업의 보조율은 사업비의 1/2 이내에서 결정된다. 이 사업의 실시주체는 도도부현, 시정촌, 농업자단체 등이다.

6.2.7. 기타 사료 대책

이 외에도 사료대책으로 첫 번째 농업자 가구별 소득보상제도 중 논 활용 소득 보상지원금(사료관련부분)과 두 번째 사료곡물 비축대책 사업 등이 있다.

첫 번째 농업자 가구별 소득보상제도 중 논 활용 소득 보상지원금(사료 관련 부분)에서는 전락작물을 조성할 경우 사료작물 지원 단가는 10a당 35,000 엔을 지원하고, 사료용 쌀, 벼 발효 조사료용(WCS: Whole Crop Silage) 지원 단가는 80,000 엔/10a, 2모작 지원의 지원 단가는 15,000 엔/10a, 경축제휴 지원(사료용 쌀의 벃짚 이용, 논 방목, 자원순환)의 지원 단가는 13,000 엔/10a이다.

두 번째 사료곡물 비축대책 사업의 2012년 예산은 13억 7,200만 엔(2011년 13억 7,200만 엔)으로, 보조율은 정액이다. 사업의 실시주체는 사단법인 배합사료공급안정기구, 비축수탁자(배합사료업체) 등이다.

7.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육류 수급 및 가격정책의 유형화에 의한 정책수단 분류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일본은 상황(예를 들면, 공급 부족이나 과잉 상황)에 따라 각기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매뉴얼화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긴급대책들이 전개된다. 둘째, 수입국 입장인 일본의 경우 국내산 과잉 공급축소와 수입육의 관리에 초점을 둔 정책이 전체 정책 대상 및 대상 품목에 걸쳐 완비되어 있다. 특히 공급축소를 위한 대

책과 수급균형 유도를 위한 관측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일본의 경우 수급균형 유도를 위한 정책과 위험분산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육류 수급 및 가격정책에 있어서도 상황에 따른 매뉴얼화 된 정책의 적용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급균형의 유도를 위한 관측사업의 강화도 필요하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위험 분산을 위한 정책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